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사회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58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학교의 범위 확대	4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 신설	9
3.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15
4.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22
5.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과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안 제26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 3. (생 략)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 ----- ----- <u>학교</u>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을-----.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영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식생활 교육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

여 식생활 교육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지방자치단체 식생활교육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식생활 교육 대상은 영유아·초·중·고생, 1인가구·고령자 등 취약계층, 영양사 등 전문인력(필수사업)과 일반 대중(자율사업)

구분	세부사업 명	사업대상
농식품부 지정사업 <필수>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교사, 영양(교)사(학교조리사 가능)
	맞춤형 식생활교육	유아, 아동, 1인가구, 청소년, 고령자 중 선택
지자체 자율사업 <권장>	로컬푸드활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자율 편성 (예시) ①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활용 ② 전통식문화 교육, ③ 농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④ 취약계층 식생활교육	국민

* 필수사업은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예·결산기준 50% 이상 편성

☐ (총 예산) 1,700백만원(국비 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기보다는 제26조를 수정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으로,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잦은 외식 등으로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¹⁾,

학교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제2조²⁾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³⁾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⁴⁾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⁵⁾(’23 기

1)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3)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준 28,954개소)을 추가하여 영유아⁶⁾도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학교”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어린이집	개소수(개)	33,246	30,923	28,954
	인원(명)	1,184,716	1,095,450	1,011,813
유치원	개소수(개)	8,660	8,562	8,441
	인원(명)	582,572	552,812	521,794
초등학교	개소수(개)	6,157	6,163	6,175
	인원(명)	2,672,340	2,664,278	2,604,929
중학교	개소수(개)	3,245	3,258	3,265
	인원(명)	1,350,770	1,348,428	1,326,831
고등학교	개소수(개)	2,375	2,373	2,379
	인원(명)	1,299,965	1,262,348	1,278,26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영유아가 다니는 지자체 어린이집 456개소에서는 텃밭 및 미각 교육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023년 지자체 어린이집 대상 식생활 교육 현황>

연번	지자체	참여자수(명)	개소수
1	서울	11,117	149
2	부산	686	8
3	대구	-	-
4	인천	2,897	42
5	광주	-	-
6	대전	13,758	41
7	울산	183	7
8	세종	2,345	20
9	경기	1,984	46
10	강원	514	14
11	충북	634	6
12	충남	200	1
13	전북	651	18
14	전남	546	12
15	경북	3,986	23
16	경남	4,074	65
17	제주	4,416	4
총합계		47,991	45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같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별 텃밭·농촌체험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동 법의 학교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규정 신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제26조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현 행	개 정 안
	<u>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우수</u> <u>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방법 및</u> <u>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u> <u>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가.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에 동의하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한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우수학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역·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특히, 초등·중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감의 교육자치 권한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⁷⁾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도 별도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아, 학교로 하여금 창의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우수학교에 식생활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7)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우수학교가 지정되는 경우, 우수학교 지정 사실 공고 및 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정된 우수학교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양한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유사하게 우수학교 지정을 하는 사례로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도”가 있음.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여기서 ‘정규 교과과정 식생활 교육’이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과 내에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과정 내 편성에 국한하지 않고 급식시간, 체험학습,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학교 자체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를 포괄하여 의미함.

따라서 ‘창의적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정규 교과과정 식생활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모범적 식생활 교육 실시 사례와 관련한 자구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별 법률에 우수학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교육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⁸⁾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의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3(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권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생활 체험 및 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8)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에서도 식생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개정안 제26조의4의 사회식생활 교육⁹⁾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¹⁰⁾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은 같은 법 제2조제4호¹¹⁾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2조¹²⁾에 따른 대학은 2023년 기준 335개가 있음.

9) 개정안 제26조의4(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는 사회식생활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 식생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학교란 대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사회식생활 교육에 포함된다는 의미임.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2)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대학교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대학교	개소수(개)	336	336	335
	인원(명)	2,544,243	2,457,354	2393,12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중 일부는 현행법 제25조¹³⁾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68개소 지정)을 통하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식생활 교육 지원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 13)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교육교재의 개발
 -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현황>

연번	지역	기 관 명	연번	지역	기 관 명
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음식연구원	35	인천	인천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생활교육센터
2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36	광주	아이쿱 빛고을식생활교육센터
3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37	경기	아이쿱 율목생협
4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38	경기	신한대학교
5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39	경기	경기농림진흥재단
6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40	경기	팔당생명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경기	경인교육대학교 식생활교육연구소	41	강원	수동고을 농어촌인성학교
8	충북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42	충남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9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43	전남	아이쿱 남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44	전북	한국농업연수원
11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45	전북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12	제주	제주대학교	46	전북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13	충남	충남대학교 식생활교육기관	47	경북	나섬식생활교육원
14	전북	원광대학교 식생활교육기관	48	경북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식품 외식산업학과
15	전남	전남과학대학교	49	경북	동국대학교 생태교육원
16	경남	한국전통식품 합천연수원	50	경남	대한영양사협회 경남영양사회
17	경기	슬로푸드문화원	51	서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18	충남	혜전대학	52	전남	전통우리음식진흥회
19	충남	호서대학교 에코푸드연구소	53	충북	충청대학교
20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54	전남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1	서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55	전북	국제한식문화재단
22	서울	대한영양사협회	56	경기	(사)식생활교육문화협회 식생활교육관
23	서울	대한식문화연구원	57	경기	수원전통문화관

연번	지역	기 관 명	연번	지역	기 관 명
24	강원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5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25	서울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	59	대전	밥상살림 식생활센터
26	서울	두레생협 식생활교육센터	60	대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27	경기	명지대학교 자연사회교육원	61	충북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8	서울	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식생활교육연구센터	62	서울	푸드포체인지
29	서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식생활시민학교	63	경북	도시농업협동조합 경북사회적농업전문가협회
30	서울	한살림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관
31	서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65	전북	(사)자연음식문화원
32	부산	아이쿱 푸른바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	66	인천	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33	부산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67	대전	숲앤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34	대구	아이쿱 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68	부산	(사)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학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18년 대학 식생활교육 교과과목 개설·운영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 등의 학교에 식생활 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한 바 있음(안 제26조의3 제1항 관련).

그러나 2019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이상 편성되지 않기 때문임.

<대학 식생활교육 교과과목 개설·운영 지원사업('15~'18년)>

☐ (사업명) 대학 식생활교육 교과과목 개설·운영 지원사업

☐ (목표) 예비교사단계부터 바른 식생활 가치에 대한 이해제고, 교육능력 함양

연 도	2015	2016	2017	2018
구분	교대	교대	교대, 일반대학	교대
개소수	7	8	15	8
학기	2	1, 2	2	2
교육시간	806	1,524	1,292	652
수강인원	719	652	1,033	1,0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에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유도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안 제26조의3제2항 관련).

<2024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개요>

☐ (내용)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및 쌀 소비 유도

☐ (2024년도 예산액) 43억 1,600만원

가. 식비 지원 3,972,000천원

· 3,972,000명×1천원=3,972,000천원

나. 홍보 및 운영비 344,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포스터, X-배너, 현수막, SNS 운영 등) : 264개교×383천원=101,000천원

· 서포터즈 발대식 및 교육 : 2회×7,000천원=14,000천원

· 서포터즈 활동비 : 130개교×2인×5개월×40천원=52,000천원

· 권역별 간담회 등 성과점검 회의 : 5회×8,000천원=40,000천원

·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집 제작 : 30,000천원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67,000천원

· 설문조사 및 분석 : 264개교×152천원=40,000천원

☐ (2023년도 우수사례) ① (연세대)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모금 사이트를 통해 <연세 행복 모금 캠페인>을 추진하여 4,500원 상당의 아침밥을 8만 7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제공, ② (목포대)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 기업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및 이벤트 등을 통해 5만 1천여명의 학생들에게 6천원 상당의 뷔페식 아침밥 제공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두 사업은 대학생의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므로, 개정을 통하여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개정안은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기관·군부대·기업 등에서의 사회식생활 교육, ③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4(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학교에서 실시하는 식생활 교육을 제외한 식생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식생활 교육 3.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전문인력 양성 규정은 사회식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대한영양사협회 및 한국영양교육평가원

대한영양사협회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은 안 제26조의4제3호의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은 ① 「국민영양관리법」 14) 상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의 법적 고유직무를 침해한다는 점, ② 「자격기본법」 15) 및 관련 공고¹⁶⁾ 상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

14)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영양상담 및 교육

15) 「자격기본법」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16)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 2018.12.31.)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국민영양관리법

① 제17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영양사와 임상영양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되는 분야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¹⁷⁾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은 같은 법 제2조제4호¹⁸⁾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학교를 제외한 분야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학교 외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사회식생

② 국민영양관리법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u>영양·식생활 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u>	
②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 금연상담·지도, 절주 상담·교육·지도, 중독폐해 예방·교육 및 상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컨설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컨설팅, 치매예방·관리, <u>기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u>	
④ 민간자격 사용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명칭 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사용 금지	
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17)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활 교육'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소득수준 '상' 계층의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¹⁹⁾은 '20년 99.8, '21년 99.5인 반면, 소득수준 '하' 계층의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은 '20년 86.6, '21년 89.6임.

소득수준에 따라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 속에서 식생활 교육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식생활 관리가 미흡한 성인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식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군 장병에게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통해 식생활을 개선하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꾸러미를 활용한 이론 및 조리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학교 외 분야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9) ① 식품안전성 확보가구분율 :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로 응답한 분율

②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2022~2023년 군 장병 대상 식생활교육 운영 현황>

연도	운영횟수	교육대상
2022	4회(9~11월)	4개 급양대
2023	11회(8~10월)	6개 급양대

※ 주 : 조리병 대상 로컬푸드 활용 레시피 교육 및 조리 실습 실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지자체 학교 외 식생활교육 운영 현황(수혜자 수)>

연번	지자체	청년 1인가구	고령자	취약계층 (한부모, 다문화, 자립준비청년 등)
1	서울	-	1,973	823
2	부산	-	-	-
3	대구	195	726	63
4	인천	-	966	412
5	광주	-	243	2,212
6	대전	250	1,085	2,077
7	울산	-	155	105
8	세종	-	884	250
9	경기	620	1,005	-
10	강원	365	229	-
11	충북	75	407	670
12	충남	-	546	522
13	전북	40	-	-
14	전남	52	1,020	-
15	경북	-	218	398
16	경남	-	2,398	-
17	제주	103	-	-
총합계		1,700	11,855	7,53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상의 식생활 교육을 ‘사회식생활 교육’으로 통칭하는 것이므로 해당 분야·계층에 대한 열거는 불필요한바, 안 제26조의4제2호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식생활 교육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영양사 및 영양사의 법적 고유직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2~2023년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현황>

연도	운영횟수	교육대상	교육과목
2022	3회	106명	농업·농촌의 가치 포함 8개 과목
2023	5회	223명	표준교육과정 등 5개 과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6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5(식생활 교육의 달)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한다.

나.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생활 교육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 차원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식생활교육주간(9.11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식생활 교육의 달 지정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여부, 기존 기념일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24. 6.)을 제시하였음.

다. 검토의견

법정기념일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거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에서 정하고 있음.

법정기념일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135개²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54개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정기념일은 농업인의 날(11.11.), 여성농업인의 날(10.15) 등 10개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기념일 현황>

기념일	날짜	근거법령 등
흙의 날	3. 11.	「친환경농어업법」
도시농업의 날	4. 11.	「도시농업법」
양잠인의 날	5.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의 날	7. 7.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곤충의 날	9. 7.	「곤충산업법」
동물보호의 날	10. 4.	「동물보호법」(25.1.3. 시행예정)
여성농업인의 날	10. 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김치의 날	11. 22.	「김치산업 진흥법」
식목일	4.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농업인의 날	11. 1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 ‘24년 3월 기준, 시행예정 기념일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9월 11일 주간²¹⁾을 식생활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식생활 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²²⁾,

개정안은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 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려는 것임.

식생활 교육을 위한 법정기념일을 정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식생활교육주간(9.11주간)이 존재함. 따라서 “식생활 교육의 달”이 아닌 “식생활 교육 주간”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존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도의 홍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21) 식생활을 연상시키는 도구인 숟가락젓가락과 생김새가 유사한 9월 11일 주간을 식생활 교육 주간으로 정함

22) 2022년의 경우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2022 식생활교육 박람회(이하 박람회)’를 개최